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4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4월 4일

3.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하고,
-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제16조의2 제1항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」하는 방식에서,

⇒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

「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」 토록 함(제20조 제2항)

$$\text{휴직자의연가일수} = \frac{12\text{월} - \text{당해년도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년도연가일수}$$

-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(제22조 제5항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생산성 향상과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하기 위하여 우리도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

휴직자를 위한 합리적인 연가일수 계산과 상위법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월1회 토요일 휴무에 따른 민원처리대책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